

서울북부지방법원 2018. 9. 7 선고 2018가단113390 판결 [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구상금 청구]

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

피 고 A

변론 종결 2018. 8. 14.

판결 선고 2018. 9. 7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98,411,85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, B, C은 2014. 8.경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)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후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, 사업지분은 각 1/3로 정하였다.

나. 피고, B, C은 각 35,000,000원을 출자하고 2014. 8. 13. 피고 명의로 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)으로부터 450,000,000원을 대출받아(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) 2014. 8. 13. 매각대금 564,000,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중 각 1/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하나은행은 2014. 8. 13.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40,000,000원,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(이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). 라.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35013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. 5. 26. B은 원고에게 구상금 77,940,901원과 그 중 77,589,786원에 대한 2016.5. 2.부터 2016. 10. 13.까지 연 10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고, 위 지급명령은 2016. 10. 25. 확정되었다.

마. 2017. 6.경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1/3지분에 대한 강제경매(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)가 개시되었고, 피고와 C이 2018. 2. 1. 각 6/1지분을 매각받아 같은 달 14.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. 위 경매절차에서 하나은행은 근저당권자로서 112,331,880원을 배당받았고,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는 2018. 2. 14.자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"소유권전부 근저당권설정"으로 목적을 변경하는 변경등기가 마쳐졌다.

[인정근거]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, 갑 제1, 4, 5, 6호증, 을 제1, 2, 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하나은행이 112,331,880원을 변제받았는데 이는 물상보증인인 B이 주채무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하나은행에게 위 금액을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B은 피고에게 112,331,880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된다. B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위

구상금 채권 중 원고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98,411,850원의 지급을 구한다.

나. 관련 법리

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, 그 연대보증인이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하였고,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제3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전액 구상 의무를 부담하며(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2다47631 판결, 대법원 1999. 10. 22. 선고 98다22451 판결 등 참조), 이는 물상보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(대법원 2008. 4. 24. 선고 2007다75648 판결 참조).

다. 판 단

위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대출의 실행 경위, 그 대출금의 사용처등을 종합하여 보면, B, C은 피고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대출금 중 각 1/3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출받았다고 봄이 상당한바,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, 피고가 채권자인 하나은행에 대하여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B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될 뿐 물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B에 대하여 채무자로서의 구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 조양희

별지

부동산의 표시

1. 경기도 남양주시 목장용지 876㎡2. 경기도 남양주시 답 126㎡3. 경기도 남양주시
위 지상

일반철골구조 단열판넬지붕 동물및식물관련시설 1층 287.04㎡

4. 경기도 남양주시
위 지상

일반철골구조 단열판넬지붕 1층 동물및식물관련시설

1층 97.65㎡

1층 97.65㎡

-끝-